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2. 08. 17

3. 변경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투자운용인력, 투자신탁 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의 요약재무내용, 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
- 집합투자증권 관련 공시 서식 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정정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⑥(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⑬(생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⑥(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⑬(현행과 같음)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table>
<tr><th>항 목</th><th>정 정 전</th><th>정 정 후</th></tr>
<tr><td>투자결정 시 유의 사항</td><td>서식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td><td>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5.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td><td>2011.08.31기준</td><td>2012.08.14기준</td></tr>
<tr><td>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td><td>2011.08.31 기준</td><td>2012.08.14 기준</td></tr>
<tr><td>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지급비율(연간, %)</th></tr>
<tr><th>K1 Class</th><th>A Class</th><th>B Class</th><th>C Class</th><th>I Class</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 colspan="5">연 0.654%</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연 1.50%</td><td>연 0.9%~0.3%</td><td>연 0.9%~0.5%</td><td>연 0.3%~0.1%</td><td>없음</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 colspan="5">연 0.03%</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d><td colspan="5">연 0.016%</td></tr>
<tr><td>기타비용</td><td colspan="5">연 0.005%</td></tr>
</table>
</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지급비율(연간, %)</th></tr>
<tr><th>K1 Class</th><th>A Class</th><th>B Class</th><th>C Class</th><th>I Class</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 colspan="5">연 0.654%</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연 1.50%</td><td>연 0.9%~0.3%</td><td>연 0.9%~0.5%</td><td>연 0.3%~0.1%</td><td>없음</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 colspan="5">연 0.03%</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d><td colspan="5">연 0.016%</td></tr>
<tr><td>기타비용</td><td colspan="5">연 0.004%</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총 보수. 비용</td><td>연 2.205%</td><td>연 1.605% ~ 1.005%</td><td>연 1.605% ~ 1.205%</td><td>연 1.005% ~ 0.805%</td><td>연 0.705%</td></tr>
<tr><td>증권 거래 비용</td><td colspan="5">연 0.68%</td></tr>
</table>
</td>
<td>
<table>
<tr><td>총 보수. 비용</td><td>연 2.204%</td><td>연 1.604% ~ 1.004%</td><td>연 1.604% ~ 1.204%</td><td>연 1.004% ~ 0.804%</td><td>연 0.704%</td></tr>
<tr><td>증권 거래 비용</td><td colspan="5">연 0.701%</td></tr>
</table>
</td>
</tr>
<tr>
<td>총보수·비용 비율</td>
<td>
<table>
<tr><td>Class A</td><td>연 1.605%</td><td>Class B</td><td>연 1.605%</td><td>Class C</td><td>연 1.005%</td><td>Class K1</td><td>2.205%</td><td>Class I</td><td>연 0.705%</td></tr>
<tr><td>Class A1</td><td>연 1.505%</td><td>Class B1</td><td>연 1.505%</td><td>Class C1</td><td>연 0.955%</td><td>Class K2</td><td>연 2.080%</td><td></td><td></td></tr>
<tr><td>Class A2</td><td>연 1.405%</td><td>Class B2</td><td>연 1.405%</td><td>Class C2</td><td>연 0.905%</td><td>Class K3</td><td>연 1.955%</td><td></td><td></td></tr>
<tr><td>Class A3</td><td>연 1.205%</td><td>Class B3</td><td>연 1.305%</td><td>Class C3</td><td>연 0.855%</td><td>Class K4</td><td>연 1.830%</td><td></td><td></td></tr>
<tr><td>Class A4</td><td>연 1.005%</td><td>Class B4</td><td>연 1.205%</td><td>Class C4</td><td>연 0.805%</td><td>Class K5</td><td>연 1.705%</td><td></td><td></td></tr>
</table>
</td>
<td>
<table>
<tr><td>Class A</td><td>연 1.604%</td><td>Class B</td><td>연 1.604%</td><td>Class C</td><td>연 1.004%</td><td>Class K1</td><td>연 2.204%</td><td>Class I</td><td>연 0.704%</td></tr>
<tr><td>Class A1</td><td>연 1.504%</td><td>Class B1</td><td>연 1.504%</td><td>Class C1</td><td>연 0.954%</td><td>Class K2</td><td>연 2.079%</td><td></td><td></td></tr>
<tr><td>Class A2</td><td>연 1.404%</td><td>Class B2</td><td>연 1.404%</td><td>Class C2</td><td>연 0.904%</td><td>Class K3</td><td>연 1.954%</td><td></td><td></td></tr>
<tr><td>Class A3</td><td>연 1.204%</td><td>Class B3</td><td>연 1.304%</td><td>Class C3</td><td>연 0.854%</td><td>Class K4</td><td>연 1.829%</td><td></td><td></td></tr>
<tr><td>Class A4</td><td>연 1.005%</td><td>Class B4</td><td>연 1.204%</td><td>Class C4</td><td>연 0.804%</td><td>Class K5</td><td>연 1.704%</td><td></td><td></td></tr>
</table>
</td>
</tr>
<tr>
<td>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td>
<td>2011.08.31기준</td>
<td>2012.08.14기준</td>
</tr>
<tr>
<td></td>
<td>서식개정에 따른 신설 문구</td>
<td>※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
</tr>
</table>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1.08.31기준	2012.08.14기준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1.08.31기준	2012.08.14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회사개요	2011.08.31기준	2012.08.14기준
다.최근 2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내용	2011.08.31기준	2012.08.14기준
라.운용자산 규모	2011.08.31기준	2012.08.14기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서식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